

---

# PREFACE

---

준특허법 통합사례집(하) 제7판 제1차 정오표입니다.

2페이지부터 제1차 정오표 시작됩니다.

취소선은 삭제, 밑줄은 추가를 의미합니다.

2026년 1월  
박 형 준 드림

---

## 1차 정오표

---

---

# CONTENTS

---

## 02 등록 후 p.v

2-20	추가 문제 1 (30점)(20점) .....	228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

No. 2-20 p.228 (점수 오기 수정)

(30점)(20점)

No. 2-6

p.173 (오기 수정)

1. 乙의 지위 - 전용실사권자독점적 통상실시권자

No. 2-13

p.212 (오류 수정)

2. 간접침해 여부 - 소극적극 (논의 필요)

3. 결론 - 비침해침해 (논의 필요)

乙의 Y 제품 제조·판매는 이 사건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.

① 乙의 Y 제품 제조·판매는 이 사건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해당한다.

② 다만, 간접침해 제도의 내재적 한계를 고려할 때, 직접침해 개연성과 관련하여 논의가 더 필요하다.

No. 2-14

p.217 (오기 수정)

3. 보관 행위

2) 실시인지 여부 - 적극소극

No. 2-18

p.240 (오기 수정)

4. 양말 판매 행위

(1) 실시 여부 - 적극소극

## 5. 결론

① A+B와 A+C의 동일증거가 아니라면 제3의 이해관계인이 선행기술 A와 C를 근거로 새로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, ② A+B와 A+C의 동일증거라면 제3의 이해관계인이 선행기술 A와 C를 근거로 새로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.

## 1. 각 특허권별 존속기간 연장 가부 - 소극

### (3) 사안

甲은 복수의 특허권으로 구성된 「하나의 의약품」을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기 위하여 각 특허권별로 유효성·안전성 시험에 소요된 기간만큼 각각 선택하여 한 차례씩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. 없고, 하나의 특허를 선택하여 연장 가능하다.

## 2. 甲의 특허권 효력 기간

### (iii) 의약제제특허권

본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후 2015. 4. 1. 출원일로부터 20년인 2035. 4. 1.까지인데, 2년 연장이 가능하여 2035. 4. 1.까지 존속 가능하다.

### (v) 소결

甲은 위 특허권들 중 하나의 특허를 선택하여 연장 가능하며, 만약 의약품도특허권에 대해 존속기간을 연장하면, 「하나의 의약품」에 대한 특허권 효력은 의약품도특허권에 대해 최대 2038. 5. 1.까지 미친다.

(4) 乙의 A+B+C+D로 구성된 네비게이터 판매행위가 2018. 2. 1.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증액에 대해 설명하시오. (8점)(7점)

No. 3-12

p.416 (오류 수정)

## 2. 결합발명 법리를 통한 반박

### (1) 결합발명 여부 - 적극

기술발전 촉진 및 산업발전을 위해,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을 것을 요한다.  
특허발명 A+B+C+D는 공지기술 A, B, C 및 D가 결합된 결합발명이다.

No. 3-21

p.464 (오기 수정)

## I. 설문(1)

### 1. '발명자란' 기재만으로 乙甲이 발명자인지 - 소극

#### (1) 判例

대법원 判例는 발명자는 발명자란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정해진다고 한다. (2011도10525)

#### (2) 사안

乙이 자산을 발명자로 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乙을 발명자로 볼 수 없다.  
甲이 공동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甲을 발명자로 볼 수 없다.

No. 3-21

p.464 (오기 수정)

## I. 설문(1)

### 1. 출원인 적격 - 法 제33조 제1항 본문 위반 여부